

#### [서식 예]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

## 소 장

- 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- 피 고 근로복지공단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 대표자 이사장 △△△

####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청구

#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○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 청 구 원 인

#### 1. 처분의 경위

- 가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소외 합자회사 ☆☆☆콜택시회사(이하 소외 회사라고 만 합니다)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○○. ○. ○. 업무 상재해를 당하여 산재요양을 하면서 20○○. ○. ○. 피고에게 휴업급여청구를 하였습니다.
- 나. 이에 피고는 원고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수입금을 평균임금 산정



에서 제외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월급만을 산입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금○○○원으로 결정하여 20○○. ○. 치료종결시까지 총 ○○ ○원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.

다.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제외한 개인별 초과 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〇〇. 〇. 〇. 이를 기각하였습니다(갑제1호증의 1, 2:심사결정서, 갑제2호증:장애인증명서 사본).

#### 2. 처분의 적법여부

- 가. 원고가 소속된 소외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소속 운전사들로부터 하루의 운송 수입금 중 일정액(운행하는 차종에 따라 일일 금 ○○○원과 금 ○○○원)을 사납금으로 납입 받고, 이를 재원으로 하여 매월 일정액을 기본급 등 명목으 로 소속 운전사들에게 지급하여 왔습니다.
- 나.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운전사들은 위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소외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, 회사에서도 그 납부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여 이는 사실상 운전사 개인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왔었고,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 회사의 택시운전사들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으로 월 평균 금 ○○○원 내외의 수입금을 개인의 수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(갑제3호증: 가계부, 갑제4호증의 1 내지 6: 각 확인서).
- 다. 일반적으로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.
- 라. 결국 피고가 원고의 개인 수입으로 된 운송수입 부분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의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료만을 기초로 하여 평 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하여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



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의 1 심사결정서 표지

1. 갑 제1호증의 2 심사결정서

1. 갑 제2호증 장애인증명서 사본

1. 갑 제3호증 가계부

1.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확인서

#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원 고 ㅇ ㅇ ㅇ (인)

### ○ ○ 행정법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· 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0조) 및 기 간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6조)			

#### 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 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